### [서식 예]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(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, 주택)

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20〇〇. 〇. 〇.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200,000원의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

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199○. ○. ○.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(주택)을 임대차보증금 25,000,000원, 월세 금 200,000원(매월말일 지급),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199○. ○. ○.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목 록 기재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.
- 2. 그 후 피고는 약정한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원고에게 재계약여부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, 이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피고는 현재까지 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3. 그런데 원고는 1990. 0. 0.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

차기간의 만료일인 20〇〇. 〇. 〇.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생물을 인도해 달라는 주택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으며, 이은 20〇〇. ○.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.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〇〇. ○. ○.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,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〇〇. ○. ○. ○. 이후로는 월세 상당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4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고,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이유로 한 20〇〇. 〇. ○.부터 인도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1. 갑 제2호증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.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등본1 .갑 제4호증통고서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 O O O . O O . 이 연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# 부동산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주택

86.6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